2023년도 특정감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연구개발비 관리 점검 1차 -

2023. 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감 사 실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대상 및 감사 중점사항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2
4. 점검 대상과제 ···························· 2

Ⅱ. 감사결과 ···························· 4

1. 총평 ···························· 4
2. 지적사항 총괄 ···························· 4
3. 지적사항 요약 ···························· 4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6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6
2. 현지조치사항 및 모범사례 일람표 ···························· 7

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8

1.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 8
2.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 12
3.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 18
4.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 26
5.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 34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사실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과 평가관리원 직원의 연구개발비 관리 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비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감사대상 및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연구개발비 용도 외 집행된 연구개발과제 중 연구시설장비비 등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전검토 및 예비조사 기간(2023. 3. 13.~4. 7.), 실지감사 기간(2023. 4. 10.~4. 14.) 동안 RCMS(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서류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5회를 실시하여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과 실물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연구시설장비비 집행 내역이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활용되었는지 여부, 연구개발비 집행 증빙서류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과다 계상 및 허위 구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였다.

[표 1] 감사 중점사항

감사 중점사항
- 연구시설장비비를 과제 외 목적으로 사용 여부 - 연구시설장비비를 양산 제품 생산에 사용 여부 - 연구시설장비비 실제 집행 여부 및 허위 증빙서류 등록 등 - 연구시설장비비 과다 계상 및 집행 행위의 적절성 점검 등 - 인건비/연구수당 및 연구활동비 부적정 사용 여부

3. 감사기간 및 인원

본 감사는 2023. 3. 13.부터 같은 해 3. 31.까지 3주 간의 사전검토 및 2023. 4. 5.부터 같은 해 4. 7.까지 3일 간의 예비조사 기간을 거쳐, 점검대상 과제를 도출하고 서면검토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감사반장 1명, 감사반원 2명을 투입하여 2023. 4. 10.부터 같은 해 4. 14.까지 5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는 2023. 5. 2.에 상임감사가 최종 확정하였다.

4. 점검대상 과제

연구개발비(연구시설장비비 등) 용도 외 집행 점검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21개(점검 대상기관 5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순번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점검 대상기관
1	○○○○ ○○○○	◇◇◇◇◇◇◇◇◇◇◇◇◇◇◇◇◇◇◇◇◇◇◇◇◇	☆☆☆☆
2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	◎◎◎◎

Ⅱ. 감사결과

1. 총평

연구개발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지적하여 전파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연구개발비 집행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투명하고 올바른 연구개발비 사용에 기여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합계			변상(금액)	징계(인원)	시정(금액)				주의경고(인원)	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인원)	현지조치	모범사례(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10	-	662,771	-	-	10 (662,771)	10 (662,771)	-	–	–	–	–	–	–	–	–	–

3. 지적사항 요약

【처분요구사항】

1)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팀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25,410,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23,189,951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시정)

2)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관련 부서(■■■■■■팀, △△△△팀)는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348,100,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323,651,400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시정 2건)

3)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관련 부서(▲▲▲▲▲팀, ▽▽▽▽팀)는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130,816,3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130,816,300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시정 2건)

4)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관련 부서(■■■■■■팀, ◁◁◁◁◁팀, ◀◀◀◀팀, ◇◇◇◇◇◇팀)는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117,026,4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114,158,064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시정 4건)

5)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팀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95,327,158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70,955,489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시정 1건)

【현지조치사항 및 모범사례 : 해당 없음】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지 적 사 항	순번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처분 요구일	조치 기한일	처리부서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1	ㅇ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25,410,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23,189,951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3. 5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팀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1	ㅇ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186,100,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165,602,620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3. 5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팀
	2	ㅇ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162,000,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158,048,780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3. 5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팀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1	ㅇ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127,266,1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127,266,100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3. 5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팀
	2	ㅇ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3,550,2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3,550,200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3. 5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팀

지 적 사 항	순번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처분 요구일	조치 기한일	처리부서
▼▼▼▼▼▼▼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1	ㅇ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26,544,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25,896,171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3. 5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팀
	2	ㅇ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39,332,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38,372,682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3. 5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팀
	3	ㅇ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6,000,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5,842,105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3. 5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팀
	4	ㅇ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45,150,4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44,047,106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3. 5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팀
▷▷▷▷▷▷▷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1	ㅇ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95,327,158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70,955,489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3. 5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팀

2. 현지조치사항 및 모범사례 일람표 : 해당 없음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자	♡♡♡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3,189,951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팀)	처분요구일	2023. 5.	회신 기한일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시 정

제　　　목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단(◇◇◇◇◇◇팀)

조 치 부 서　⦿⦿⦿⦿⦿단(◇◇◇◇◇◇팀)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산업기술 분류에 따라 평가관리원의 각 사업부서에서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사업에서 지원한 ‘♤♤♤♤♤♤♤♤♤♤’ 연구개발과제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관련 규정(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 금액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비품 및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등으로 집행한 연구활동비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에서 지원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1. 6. 1.~2023. 12. 3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374백만원)'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이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주)☆☆☆☆(주관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34백만원)는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는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 복합재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원재료

(▷▷▷▷ / 총 4,000천원)를 구매하고,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 설비의 개조 및 제작용 재료(펌프, 노즐, 모터 등 / 총 17,020천원)를 구매한 후 이를 연구개발과제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또한 ㈜☆☆☆☆는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자체 보유시설에 대한 전원공사 및 시설공사 비용으로 총 4,390천원을 사용하였다.

[표 1] 연구개발비(연구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부적정 집행액

구분	사용일자	항목	품목	거래처	사용금액 (천원)	부적정 집행액 (천원)
○○○○○ 복합재	2022.6.28.	연구재료비	○○○○○ 복합체	○○○○	18,000	3,000
	2022.12.12.	연구재료비	○○○○○ 복합체	○○○○	9,000	1,000
소계					27,000	4,000
○○○○○ 설비	2021.08.05	연구재료비	절단형 노즐	○○○○	2,000	1,000
	2022.02.04	연구재료비	노즐 구매	○○○○	1,800	900
	2022.03.31	연구재료비	초고압 발생용 펌프	○○○○	15,000	10,000
	2022.03.31	연구재료비	원료 공급용 모터	○○○○	5,000	1,420
	2022.06.22	연구재료비	믹서컨트롤판넬	○○○○	2,800	2,800
	2022.08.09	연구재료비	고압노즐	○○○○	1,800	900
소계					28,400	17,020
전기 및 시설공사	2021.09.29	연구시설·장비비	냉각쿨러 증설	○○○○	700	700
	2021.10.28	간접비	실험실 동력콘센트 설치	○○○○	1,100	1,100
	2022.09.30	연구시설·장비비	판넬 개조 및 장비 연결공사	○○○○	2,200	2,200
	2022.10.25	연구시설·장비비	냉각쿨러 전원공사	○○○○	390	390
소계					4,390	4,390
합계						25,410

관계부서 의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팀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적정 집행액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팀장)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25,410,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23,189,951원[1]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1) 연구개발비 요령 제20조제8항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구분 단계/연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부적정 집행액(원)	회수 대상액(원)
0 / 1	348,000,000	19,892,000	94.6	2,800,000	2,648,603
0 / 2	566,000,000	57,000,000	90.9	22,610,000	20,541,348
합 계				25,410,000	23,189,951

일련번호	2	감사자	♡♡♡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323,651,4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팀), ◈◈◈◈단(△△△△팀)	처분요구일	2023. 5.	회신 기한일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시 정

제　　　목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단(■■■■■■팀), ◈◈◈◈단(△△△△팀)

조 치 부 서　♣♣♣♣단(■■■■■■팀), ◈◈◈◈단(△△△△팀)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사업 및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는 ■■■■■■팀, ※※※※※※※※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관련 규정(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 금액과 증빙서류가 미비한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 및 ※※※※※※※※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이며, @@@@@@은 [표 1]과 같이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총 3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은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표 1] @@@@@@ 수행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과제번호)	개발기간	기관 역할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 □□□사업	◇◇◇◇◇◇◇◇◇◇◇◇◇◇ (○○○○○○○○○)	2019.4.1~ 2021.12.31	공동	3,560,000	579,750
□□□□□□ □□□사업	◇◇◇◇◇◇◇◇◇◇◇◇◇◇ (○○○○○○○○○)	2020.4.1~ 2022.12.31	공동	4,000,000	500,000
※※※※※ ※※※사업	◇◇◇◇◇◇◇◇◇◇◇◇◇◇ (○○○○○○○○○)	2021.4.1~ 2023.12.31	주관	2,600,000	1,020,000

그런데 @@@@@@은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설계·해석 소프트웨어와 연구장비에 대한 임차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서 발행하는 '○○○○'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RCMS(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표 2]과 같이 해당 소프트웨어 및 연구장비 임차 비용 총 348,100천원을 연구개발과제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표 2] 연구개발비(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부적정 집행액

부서	과제번호	단계-연차	항목	품목	거래처	사용금액 (천원)	부적정 집행액 (천원)
[redacted]팀	○○○○ ○○○○	0-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장비 임차	⊠⊠⊠⊠⊠	27,000	27,000
		0-2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장비 임차	⊠⊠⊠⊠⊠	27,000	27,000
		0-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장비 임차	⊠⊠⊠⊠⊠	38,000	38,000
	○○○○ ○○○○	0-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SW 임차	⊠⊠⊠⊠⊠	21,000	21,000
		0-2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SW 임차	⊠⊠⊠⊠⊠	38,100	38,100
		0-3	연구활동비	SW 임차	⊠⊠⊠⊠⊠	35,000	35,000
	소계					186,100	186,100
△△△△팀	○○○○ ○○○○	0-1	연구활동비	장비 임차	⊠⊠⊠⊠⊠	73,000	73,000
		0-2	연구활동비	SW 임차	⊠⊠⊠⊠⊠	89,000	89,000
	소계					162,000	162,000
합계							348,100

* 연구개발과제별 세부 집행 내역은 별첨 1 참조

관계부서 의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redacted]팀, △△

△△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적정 집행액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단([redacted]팀장)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186,100,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165,602,620원[2)]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단(△△△△팀장)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162,000,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158,048,780원[2)]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2) 연구개발비 요령 제20조제8항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부서	과제번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부적정 집행액 (원)	회수 대상액 (원)
	과제번호	단계/연차					
[redacted] 팀	○○ ○○	0 / 1	185,000,000	36,800,000	83.4	27,000,000	22,520,288
		0 / 2	182,000,000	35,900,000	83.5	27,000,000	22,551,629
		0 / 3	212,750,000	5,500,000	97.5	38,000,000	37,042,382
	소계					92,000,000	82,114,299
	○○ ○○	0 / 1	150,000,000	29,600,000	83.5	21,000,000	17,538,975
		0 / 2	200,000,000	39,600,000	83.5	38,100,000	31,803,005
		0 / 3	150,000,000	3,750,000	97.6	35,000,000	34,146,341
	소계					94,100,000	83,488,321
△△△ △팀	○○ ○○	0 / 1	300,000,000	7,500,000	97.6	73,000,000	71,219,512
		0 / 2	380,000,000	9,500,000	97.6	89,000,000	86,829,268
	소계					162,000,000	158,048,780
합계						348,100,000	323,651,400

[별첨 1] @@@@@@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액 세부 내역

과제번호 (부서)	단계	연차	사용 일자	항목	품목	거래처	사용 금액 (천원)	부적정 집행액 (천원)
	0	1	2019. 10.3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15,000	15,000
	0	1	2019. 10.3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12,000	12,000
	0	2	2020. 03.3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12,000	12,000
○○○○ ([redacted]팀)	0	2	2020. 03.3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15,000	15,000
	0	3	2021. 03.3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15,000	15,000
	0	3	2021. 03.3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11,000	11,000
	0	3	2021. 03.3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12,000	12,000
소계							92,000	92,000
	0	1	2020. 06.30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4,000	4,000
	0	1	2020. 06.30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17,000	17,000
○○○○ ([redacted]팀)	0	2	2021. 03.3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17,000	17,000
	0	2	2021. 03.3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18,000	18,000
	0	2	2021. 08.3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3,100	3,100

	0	3	2022. 06.30	연구활동비	○○○○○○○	▧▧▧▧▧	18,000	18,000
	0	3	2022. 06.30	연구활동비	○○○○○○○	▧▧▧▧▧	17,000	17,000
	소계						94,100	94,100
○○○○ (△△△△ 팀)	0	1	2021. 06.30	연구활동비	○○○○○○○	▧▧▧▧▧	15,000	15,000
	0	1	2021. 06.30	연구활동비	○○○○○○○	▧▧▧▧▧	23,000	23,000
	0	1	2021. 06.30	연구활동비	○○○○○○○	▧▧▧▧▧	15,000	15,000
	0	1	2021. 06.30	연구활동비	○○○○○○○	▧▧▧▧▧	20,000	20,000
	0	2	2022. 06.30	연구활동비	○○○○○○○	▧▧▧▧▧	16,000	16,000
	0	2	2022. 06.30	연구활동비	○○○○○○○	▧▧▧▧▧	20,000	20,000
	0	2	2022. 06.30	연구활동비	○○○○○○○	▧▧▧▧▧	15,000	15,000
	0	2	2022. 06.30	연구활동비	○○○○○○○	▧▧▧▧▧	23,000	23,000
	0	2	2022. 06.30	연구활동비	○○○○○○○	▧▧▧▧▧	15,000	15,000
	소계						162,000	162,000
합계								348,100

일련번호	3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30,816,3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팀), ◐◐◐◐단(▽▽▽▽팀)	처분요구일	2023. 5.	회신 기한일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시 정

제　　　목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단(▲▲▲▲▲팀), ◐◐◐◐단(▽▽▽▽팀)

조 치 부 서　⦿⦿⦿⦿⦿단(▲▲▲▲▲팀), ◐◐◐◐단(▽▽▽▽팀)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사업 및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는 ▲▲▲▲▲팀, ▤▤▤▤▤▤▤▤▤▤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관련 규정(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에 따르면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이외 간접비의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의 급여를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과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등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 및 ▤▤▤▤▤▤▤▤▤▤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이며, ★★★★는 [별첨 1]과 같이 관련 사업에서 지원된 총 11개 연구개발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는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는 [표 1]과 같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경영지원실에 소속되어 인사 및 노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비연구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와 연구수당 총 103,314,300원을 집행하였다.

[표 1] 연구개발비(인건비, 연구수당) 부적정 집행액

구분	과제번호	단계-연차	성명	품목	사용금액 (원)	부적정 집행액 (원)
▲▲▲ ▲▲팀	○○○○○ ○○○	0-1	○○○○	인건비/연구수당	3,291,000	3,291,000
	○○○○○ ○○○	0-1	○○○○	인건비/연구수당	23,927,000	23,927,000
		0-2	○○○○	인건비/연구수당	40,351,000	40,351,000
	○○○○○ ○○○	0-1	○○○○	인건비/연구수당	9,486,300	9,486,300
	○○○○○ ○○○	0-1	○○○○	인건비/연구수당	9,564,000	9,564,000
		0-2	○○○○	인건비/연구수당	6,221,000	6,221,000
	○○○○○ ○○○	0-1	○○○○	인건비/연구수당	7,674,000	7,674,000
	○○○○○ ○○○	0-1	○○○○	인건비	2,800,000	2,800,000
	합계					103,314,300

* 연구개발과제별 세부 집행 내역은 별첨 2 참조

또한 ★★★★는 [표 2]와 같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활동비(사무용품비, 인쇄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기관경비 및 개인성 물품구입 등으로 총 27,502천원을 집행하였다.

[표 2] 연구개발비(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액

구분	과제번호	단계-연차	항목	품목	사용금액 (원)	부적정 집행액 (원)
▲▲▲▲▲ 팀	○○○○○ ○○○	0-2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	1,220,000	1,220,000
	○○○○○ ○○○	0-2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인쇄비	2,460,000	2,460,000
	○○○○○ ○○○	0-2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인쇄비	2,185,300	2,185,300
	○○○○○ ○○○	0-2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인쇄비	2,330,100	2,330,100
	○○○○○ ○○○	0-2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인쇄비	2,362,000	2,362,000
	○○○○○ ○○○	0-2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인쇄비	2,180,000	2,180,000
	○○○○○ ○○○	0-2	연구활동비	인쇄비	3,884,500	3,884,500
	○○○○○ ○○○	0-1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	1,499,080	1,499,080
		0-2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	961,400	961,400

	○○○○○ ○○○	0-1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	2,000,020	2,000,020
		0-2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2,869,400	2,869,400
	소계				23,951,800	23,951,800
▽▽▽▽ 팀	○○○○○ ○○○	0-4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	842,200	842,200
	○○○○○ ○○○	0-3	연구활동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2,708,000	2,708,000
	소계				3,550,200	3,550,200
합계						**27,502,000**

* 연구개발과제별 세부 집행 내역은 별첨 3 참조

관계부서 의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팀, ▽▽▽▽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적정 집행액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단(▲▲▲▲▲팀장)**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127,266,1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127,266,100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단(▽▽▽▽팀장)**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3,550,2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3,550,200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첨 1] ★★★★ 수행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과제번호)	개발기간	기관 역할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 (○○○○○○○○○)	2021.04.01 ~2023.12.31	참여	1,329,000	210,000
	◇◇◇◇◇◇◇◇◇◇◇◇◇ (○○○○○○○○○)	2021.04.01 ~2023.12.31	참여	1,750,000	286,000
	◇◇◇◇◇◇◇◇◇◇◇◇◇ (○○○○○○○○○)	2021.04.01 ~2023.12.31	참여	3,955,000	286,050
	◇◇◇◇◇◇◇◇◇◇◇◇◇ (○○○○○○○○○)	2021.04.01 ~2023.12.31	참여	5,894,000	285,000
◆◆◆◆◆◆◆◆사업	◇◇◇◇◇◇◇◇◇◇◇◇◇ (○○○○○○○○○)	2021.04.01 ~2023.12.31	참여	1,595,000	291,000
	◇◇◇◇◇◇◇◇◇◇◇◇◇ (○○○○○○○○○)	2021.04.01 ~2023.12.31	참여	1,750,000	214,000
	◇◇◇◇◇◇◇◇◇◇◇◇◇ (○○○○○○○○○)	2021.09.01 ~2024.12.31	참여	3,926,000	188,000
	◇◇◇◇◇◇◇◇◇◇◇◇◇ (○○○○○○○○○)	2021.09.01 ~2024.12.31	참여	3,901,000	173,500
	◇◇◇◇◇◇◇◇◇◇◇◇◇ (○○○○○○○○○)	2021.09.01 ~2024.12.31	참여	2,590,000	262,600
▤▤▤▤▤▤▤▤▤사업	◇◇◇◇◇◇◇◇◇◇◇◇◇ (○○○○○○○○○)	2019.07.01 ~2022.12.31	참여	408,000	75,000
	◇◇◇◇◇◇◇◇◇◇◇◇◇ (○○○○○○○○○)	2020.04.01 ~2023.12.31	참여	2,470,000	390,000

[별첨 2] ★★★★ 인건비/연구수당 부적정 집행액 세부 내역

과제번호 (부서)	단계	연차	사용일자	항목	품목	참여연구자	부적정 집행액 (원)
○○○○ (▲▲▲▲▲팀)	0	1	2022.01.06	연구수당	연구수당	○○○○	495,000
	0	1	2021.07.23	인건비	210702인건비(4~6)	○○○○	1,525,000
	0	1	2021.09.13	인건비	7~9월 인건비	○○○○	1,271,000
○○○○ (▲▲▲▲▲팀)	0	1	2022.01.06	연구수당	연구수당	○○○○	594,000
	0	2	2023.01.09	연구수당	연구수당	○○○○	351,000
	0	1	2021.06.30	인건비	4~6월 신규인건비	○○○○	3,333,000
	0	1	2021.09.16	인건비	21년도 2차 인건비	○○○○	9,999,000
	0	1	2021.12.28	인건비	21년도 4분기 인건비	○○○○	10,001,000
	0	2	2022.07.08	인건비	인건비_1월	○○○○	3,333,333
	0	2	2022.07.08	인건비	인건비_2월	○○○○	3,333,333
	0	2	2022.07.08	인건비	인건비_3월	○○○○	3,333,333
	0	2	2022.07.08	인건비	인건비_4월	○○○○	3,333,333
	0	2	2022.07.08	인건비	인건비_5월	○○○○	3,333,334
	0	2	2022.07.08	인건비	인건비_6월	○○○○	3,333,334
	0	2	2022.12.02	인건비	인건비_7월	○○○○	3,333,333
	0	2	2022.12.02	인건비	인건비_8월	○○○○	3,333,333
	0	2	2022.12.02	인건비	인건비_9월	○○○○	3,333,333
	0	2	2022.12.02	인건비	인건비_10월	○○○○	3,333,333
	0	2	2022.12.02	인건비	인건비_11월	○○○○	3,333,333
	0	2	2022.12.02	인건비	인건비_12월	○○○○	3,333,335
○○○○ (▲▲▲▲▲팀)	0	1	2022.01.06	연구수당	연구수당	○○○○	412,000
	0	1	2021.06.30	인건비	4~6월 기존인건비	○○○○	3,024,000
	0	1	2021.09.08	인건비	3분기 인건비(17,710천원)	○○○○	3,023,300
	0	1	2021.12.28	인건비	4분기 인건비(20,608천원)	○○○○	3,027,000

○○○○(▲▲▲▲▲팀)	0	1	2022.01.06	연구수당	연구수당	○○○○	489,000
	0	2	2023.01.09	연구수당	연구수당	○○○○	171,000
	0	1	2021.07.01	인건비	4~6월 인건비	○○○○	3,025,000
	0	1	2021.12.03	인건비	7월~9월인건비	○○○○	3,025,000
	0	1	2021.12.30	인건비	1차년도 인건비 이체(3차)	○○○○	3,025,000
	0	2	2022.07.11	인건비	인건비_1월	○○○○	504,167
	0	2	2022.07.11	인건비	인건비_2월	○○○○	504,167
	0	2	2022.07.11	인건비	인건비_3월	○○○○	504,166
	0	2	2022.07.11	인건비	인건비_4월	○○○○	504,167
	0	2	2022.07.11	인건비	인건비_5월	○○○○	504,167
	0	2	2022.07.11	인건비	인건비_6월	○○○○	504,166
	0	2	2022.12.02	인건비	인건비_7월	○○○○	504,166
	0	2	2022.12.02	인건비	인건비_8월	○○○○	504,166
	0	2	2022.12.02	인건비	인건비_9월	○○○○	504,166
	0	2	2022.12.02	인건비	인건비_10월	○○○○	504,166
	0	2	2022.12.02	인건비	인건비_11월	○○○○	504,168
	0	2	2022.12.02	인건비	인건비_12월	○○○○	504,168
○○○○(▲▲▲▲▲팀)	0	1	2022.01.06	연구수당	연구수당	○○○○	499,000
	0	1	2021.06.24	인건비	4~6월 인건비	○○○○	3,254,000
	0	1	2021.09.13	인건비	7~9월 인건비	○○○○	2,941,000
	0	1	2021.12.30	인건비	1차년도 인건비 이체(3차)	○○○○	980,000
○○○○(▲▲▲▲▲팀)	0	1	2022.02.16	인건비	인건비	○○○○	2,800,000
합계							103,314,300

[별첨 3] ★★★★ 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액 세부 내역

과제번호 (부서)	단계	연차	사용일자	항목	거래처명	품목	부적정 집행액 (원)
○○○○ (▲▲▲▲▲팀)	0	2	2022.04.26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1,220,000
○○○○ (▲▲▲▲▲팀)	0	2	2022.04.26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1,260,000
	0	2	2022.06.24	연구활동비	○○○○	인쇄비	1,200,000
○○○○ (▲▲▲▲▲팀)	0	2	2022.05.04	연구활동비	○○○○	인쇄비	1,000,000
	0	2	2022.10.05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1,185,300
○○○○ (▲▲▲▲▲팀)	0	2	2022.04.26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1,320,000
	0	2	2022.06.07	연구활동비	○○○○	인쇄비	1,010,100
○○○○ (▲▲▲▲▲팀)	0	2	2022.04.26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1,130,000
	0	2	2022.07.13	연구활동비	○○○○	인쇄비	1,232,000
○○○○ (▲▲▲▲▲팀)	0	2	2022.04.26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980,000
	0	2	2022.06.24	연구활동비	○○○○	인쇄비	1,200,000
○○○○ (▲▲▲▲▲팀)	0	2	2022.07.13	연구활동비	○○○○	인쇄비	1,232,000
	0	2	2022.08.03	연구활동비	○○○○	인쇄비	1,200,000
	0	2	2022.12.22	연구활동비	○○○○	인쇄비	1,452,500
○○○○ (▲▲▲▲▲팀)	0	1	2022.02.25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1,499,080
	0	2	2022.10.05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961,400
○○○○ (▲▲▲▲▲팀)	0	1	2022.02.25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2,000,020
	0	2	2022.10.05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1,024,400
	0	2	2022.12.22	연구활동비	○○○○	인쇄비	1,845,000
○○○○ (▽▽▽▽팀)	0	4	2022.10.05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842,200
○○○○ (▽▽▽▽팀)	0	3	2022.04.26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비	1,040,000
	0	3	2022.12.22	연구활동비	○○○○	인쇄비	1,668,000
합계							27,502,000

일련번호	4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14,158,064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팀, ◁◁◁◁◁팀, ◀◀◀◀팀), ⦿⦿⦿⦿⦿단(◇◇◇◇◇◇팀)	처분요구일	2023. 5.	회신 기한일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시 정

제 목 ▼▼▼▼▼▼▼▼▼▼사업 등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단(■■■■■■팀, ◁◁◁◁◁팀, ◀◀◀◀팀), ⦿⦿⦿⦿⦿단(◇◇◇◇◇◇팀)

조 치 부 서 ♣♣♣♣단(■■■■■■팀, ◁◁◁◁◁팀, ◀◀◀◀팀), ⦿⦿⦿⦿⦿단(◇◇◇◇◇◇팀)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사업은 ■■■■■■팀, ▼▼▼▼▼▼▼▼▼▼사업은 ◁◁◁◁◁팀, ◑◑◑◑◑◑◑◑사업은 ◀◀◀◀팀, ◆◆◆◆◆◆◆◆사업 및 ☏☏☏☏☏☏☏☏사업은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관련 규정(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이며, ●●●은 [표 1]과 같이 관련 사업에서 지원한 총 5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은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표 1] ●●● 수행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과제번호)	개발기간	기관 역할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 □□사업	◇◇◇◇◇◇◇◇◇◇◇◇ (○○○○○○○○)	2022.5.1~ 2024.12.31	주관	4,385,000	1,905,000
▼▼▼▼▼▼▼ ▼▼사업	◇◇◇◇◇◇◇◇◇◇◇◇ (○○○○○○○○)	2020.4.1~ 2024.12.31	주관	7,861,143	2,520,000
◑◑◑◑◑◑◑ ◑사업	◇◇◇◇◇◇◇◇◇◇◇◇ (○○○○○○○○)	2018.9.1~ 2021.12.31	공동	3,345,934	673,600
☏☏☏☏☏☏☏ ☏사업	◇◇◇◇◇◇◇◇◇◇◇◇ (○○○○○○○○)	2021.4.1~ 2024.12.31	주관	2,700,000	1,304,800
◆◆◆◆◆◆◆ ◆사업	◇◇◇◇◇◇◇◇◇◇◇◇ (○○○○○○○○)	2022.7.1~ 2026.12.31	주관	2,737,000	1,154,000

그런데 ●●●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재료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표 2]와 같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가공비 총 117,026,4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연구개발비(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부적정 집행액

부서	과제번호	단계-연차	항목	사용금액 (원)	부적정 집행액 (원)
■■■■■■팀	○○○○○ ○○○	0-1	연구재료비	85,700,000	26,544,000
◁◁◁◁◁팀	○○○○○ ○○○	1-3	연구재료비	146,500,000	39,332,000
◀◀◀◀팀	○○○○○ ○○○	1-4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6,000,000	6,000,000
◇◇◇◇◇◇팀	○○○○○ ○○○	0-2	연구재료비	145,940,000	37,730,400
	○○○○○ ○○○	1-1	연구재료비	26,900,000	7,420,000
합계					117,026,400

* 연구개발과제별 세부 집행 내역은 별첨 1 참조

관계부서 의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팀, ◁◁◁◁◁팀, ◀◀◀◀팀, ◇◇◇◇◇◇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적정 집행액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단(■■■■■■**팀장**)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26,544,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25,896,171[3]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단(◁◁◁◁◁**팀장**)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39,332,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38,372,682원[3]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③ ♣♣♣♣단(◀◀◀◀**팀장**)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6,000,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5,842,105원[3]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④ ⊙⊙⊙⊙⊙단(◇◇◇◇◇◇**팀장**)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45,150,4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44,047,106원[3]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3) 연구개발비 요령 제20조제8항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부서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부적정 집행액(원)	회수 대상액(원)
	과제번호	단계/연차					
■■■■■■팀	○○○○	0 / 1	305,000,000	7,630,000	97.6	26,544,000	25,896,171
◁◁◁◁◁팀	○○○○	1 / 3	565,000,000	14,125,000	97.6	39,332,000	38,372,682
◀◀◀◀팀	○○○○	1 / 4	222,000,000	6,000,000	97.4	6,000,000	5,842,105
◇◇◇◇◇◇팀	○○○○	0 / 2	435,000,000	10,900,000	97.6	37,730,400	36,808,082
	○○○○	1 / 1	140,000,000	3,500,000	97.6	7,420,000	7,239,024
	소계					45,150,400	44,047,106
합계						117,026,400	114,158,064

[별첨 1] ●●●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액 세부 내역

과제번호 (부서)	단계	연차	사용일자	항목	거래처	품목	사용금액 (원)	부적정 집행액 (원)
	0	1	2022.07.20	연구재료비	○○○○	◇◇◇◇◇	10,000,000	4,500,000
	0	1	2022.07.26	연구재료비	○○○○	◇◇◇◇◇	6,200,000	1,674,000
	0	1	2022.08.26	연구재료비	○○○○	◇◇◇◇◇	11,500,000	3,105,000
	0	1	2022.08.26	연구재료비	○○○○	◇◇◇◇◇	6,000,000	2,700,000
	0	1	2022.08.31	연구재료비	○○○○	◇◇◇◇◇	10,700,000	2,140,000
○○○○ (■■■■■■팀)	0	1	2022.09.07	연구재료비	○○○○	◇◇◇◇◇	4,300,000	129,000
	0	1	2022.09.15	연구재료비	○○○○	◇◇◇◇◇	6,500,000	1,755,000
	0	1	2022.09.16	연구재료비	○○○○	◇◇◇◇◇	8,200,000	1,640,000
	0	1	2022.09.20	연구재료비	○○○○	◇◇◇◇◇	10,000,000	4,500,000
	0	1	2022.09.29	연구재료비	○○○○	◇◇◇◇◇	6,000,000	2,700,000
	0	1	2022.10.18	연구재료비	○○○○	◇◇◇◇◇	6,300,000	1,701,000
소계							85,700,000	26,544,000
	1	3	2022.05.03	연구재료비	○○○○	◇◇◇◇◇	9,200,000	2,484,000
	1	3	2022.05.04	연구재료비	○○○○	◇◇◇◇◇	10,500,000	2,100,000
○○○○ (◁◁◁◁◁팀)	1	3	2022.05.06	연구재료비	○○○○	◇◇◇◇◇	10,500,000	2,100,000
	1	3	2022.06.21	연구재료비	○○○○	◇◇◇◇◇	11,000,000	4,950,000
	1	3	2022.06.22	연구재	○○	◇◇◇◇◇	9,300,000	1,860,000

				료비	○○			
	1	3	2022.07.08	연구재료비	○○○○	◇◇◇◇◇	8,200,000	246,000
	1	3	2022.07.22	연구재료비	○○○○	◇◇◇◇◇	11,500,000	2,300,000
	1	3	2022.07.26	연구재료비	○○○○	◇◇◇◇◇	7,800,000	2,106,000
	1	3	2022.08.27	연구재료비	○○○○	◇◇◇◇◇	9,700,000	1,940,000
	1	3	2022.08.29	연구재료비	○○○○	◇◇◇◇◇	9,200,000	2,484,000
	1	3	2022.09.22	연구재료비	○○○○	◇◇◇◇◇	4,600,000	1,242,000
	1	3	2022.10.20	연구재료비	○○○○	◇◇◇◇◇	11,000,000	2,970,000
	1	3	2022.10.20	연구재료비	○○○○	◇◇◇◇◇	11,000,000	2,200,000
	1	3	2022.10.20	연구재료비	○○○○	◇◇◇◇◇	12,000,000	5,400,000
	1	3	2022.10.27	연구재료비	○○○○	◇◇◇◇◇	11,000,000	4,950,000
	소계						146,500,000	39,332,000
○○○○(◀◀◀◀팀)	1	4	2021.07.15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6,000,000	6,000,000
	소계						6,000,000	6,000,000
○○○○(◇◇◇◇◇◇팀)	0	2	2022.05.02	연구재료비	○○○○	◇◇◇◇◇	4,800,000	144,000
	0	2	2022.05.03	연구재료비	○○○○	◇◇◇◇◇	5,000,000	150,000
	0	2	2022.05.04	연구재료비	○○○○	◇◇◇◇◇	18,620,000	5,027,400

	0	2	2022.05.04	연구재료비	○○○○	◇◇◇◇◇	18,620,000	3,724,000
	0	2	2022.05.09	연구재료비	○○○○	◇◇◇◇◇	17,000,000	7,650,000
	0	2	2022.06.15	연구재료비	○○○○	◇◇◇◇◇	11,000,000	330,000
	0	2	2022.06.24	연구재료비	○○○○	◇◇◇◇◇	14,500,000	3,915,000
	0	2	2022.06.27	연구재료비	○○○○	◇◇◇◇◇	14,700,000	2,940,000
	0	2	2022.07.25	연구재료비	○○○○	◇◇◇◇◇	7,200,000	1,944,000
	0	2	2022.07.26	연구재료비	○○○○	◇◇◇◇◇	6,700,000	1,340,000
	0	2	2022.07.28	연구재료비	○○○○	◇◇◇◇◇	13,600,000	6,120,000
	0	2	2022.10.25	연구재료비	○○○○	◇◇◇◇◇	10,800,000	2,916,000
	0	2	2022.10.25	연구재료비	○○○○	◇◇◇◇◇	3,400,000	1,530,000
소계							145,940,000	37,730,400
○○○○ (◇◇◇◇◇◇팀)	1	1	2022.09.28	연구재료비	○○○○	◇◇◇◇◇	5,800,000	1,566,000
	1	1	2022.09.29	연구재료비	○○○○	◇◇◇◇◇	5,600,000	1,120,000
	1	1	2022.10.18	연구재료비	○○○○	◇◇◇◇◇	4,800,000	2,160,000
	1	1	2022.10.25	연구재료비	○○○○	◇◇◇◇◇	6,200,000	1,674,000
	1	1	2022.10.25	연구재료비	○○○○	◇◇◇◇◇	4,500,000	900,000
소계							26,900,000	7,420,000
합 계							411,040,000	117,026,400

일련번호	5	감사자	♡♡♡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70,955,489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팀)	처분요구일	2023. 5.	회신 기한일	2023. 7. (통보일로부터 2개월)

시 정

제　　　목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단(△△△△팀)

조 치 부 서　◈◈◈◈단(△△△△팀)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사업에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관련 규정(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에 따르면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요령 [별표 6]에 따르면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이외 간접비의 연구지원인력과 연구지원전문가의 급여를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 금액, 증빙서류가 미비한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한 금액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에서 지원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2019. 6. 1.~2020. 5. 3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5백만원)'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이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주)◎◎◎◎(주관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30백만원)는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은 [표 1]과 같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비연구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해당 인력에게 인건

비 총 23,835,158원을 집행하였다.

[표 1] 연구개발비(인건비) 부적정 집행액

사용일자	항목	품목	참여연구자	사용금액 (원)	부적정 집행액 (원)
2019.08.05	인건비	2019년 07월 인건비	○○○	2,000,000	2,000,000
2019.09.05	인건비	2019년 08월 인건비	○○○	2,000,000	2,000,000
2019.10.04	인건비	2019년 09월 인건비	○○○	2,000,000	2,000,000
2019.11.05	인건비	2019년 10월 인건비	○○○	2,000,000	2,000,000
2019.11.26	인건비	6월 인건비	○○○	2,000,000	2,000,000
2019.12.05	인건비	2019년 11월 인건비	○○○	2,000,000	2,000,000
2020.01.03	인건비	2019년 12월 인건비	○○○	2,000,000	2,000,000
2020.02.05	인건비	2020년 01월 인건비	○○○	2,000,000	2,000,000
2020.03.05	인건비	2020년 02월 인건비	○○○	2,000,000	2,000,000
2020.04.03	인건비	2020년 03월 인건비	○○○	2,000,000	2,000,000
2020.05.04	인건비	2020년 04월 인건비	○○○	1,996,445	1,996,445
2020.06.05	인건비	2020년 05월 인건비	○○○	1,838,713	1,838,713
합계					23,835,158

또한 (주)◎◎◎◎은 [표 2]와 같이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여 기관 경비 등의 목적으로 총 19,000,000원을 집행하였다.

[표 2] 연구개발비(연구수당) 부적정 집행액

사용일자	항목	참여연구자	사용금액 (원)	부적정 집행액 (원)
2020.11.30	연구수당	○○○	2,000,000	2,000,000
2020.11.30	연구수당	○○○	350,000	350,000
2020.11.30	연구수당	○○○	1,250,000	1,250,000
2020.11.30	연구수당	○○○	1,000,000	1,000,000
2020.11.30	연구수당	○○○	2,000,000	2,000,000
2020.11.30	연구수당	○○○	1,100,000	1,100,000
2020.11.30	연구수당	○○○	2,250,000	2,250,000
2020.11.30	연구수당	○○○	2,250,000	2,250,000
2020.11.30	연구수당	○○○	1,300,000	1,300,000

2020.11.30	연구수당	○○○	2,250,000	2,250,000
2020.11.30	연구수당	○○○	1,000,000	1,000,000
2020.11.30	연구수당	○○○	2,250,000	2,250,000
합계			19,000,000	19,000,000

더불어 (주)◎◎◎◎은 [표 3]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RCMS에 등록하고, 해당 연구개발비를 생산 및 자체개발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으로 총 38,992,000원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집행 및 연구개발비 증빙서류 미비한 집행으로 총 13,500,000원을 사용하였다.

[표 3] 연구개발비(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부적정 집행액

구분	사용일자	항목	거래처명	품목	사용금액 (원)	부적정 집행액 (원)
과제 목적 외 사용	2019.09.30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Grilon구입	5,000,000	5,000,000
	2019.10.08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TPU구입	12,000,000	12,000,000
	2019.11.29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TPU구입	12,000,000	12,000,000
	2020.03.25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상.하부 니들	3,992,000	3,992,000
	2020.04.24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상.하부 cam	6,000,000	6,000,000
소계					38,992,000	38,992,000
입고 지연	2020.03.25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컷팅날	1,500,000	1,500,000
증빙서류 미비	2020.01.14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TPEE	12,000,000	12,000,000
소계					13,500,000	13,500,000
합계					52,492,000	52,492,000

관계부서 의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팀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적정 집행액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단(△△△△팀장)**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95,327,158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70,955,489[4)]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4) 연구개발비 요령 제20조제8항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구분 단계/연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부적정 집행액(원)	회수 대상액(원)
0 / 1	230,000,000	79,000,000	74.4	95,327,158	70,955,489
합 계				95,327,158	70,955,489